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537

발의연월일: 2020. 7. 6.

발 의 자:이주환·김성원·최승재

권명호·김승수·이 용

유상범 · 엄태영 · 정희용

전주혜 • 한무경 • 정동만

의원(12인)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계절별·월별 업무량의 증폭이 큰 산업의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위하여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2주 단위로, 근로 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3개월 단위로 탄력적 근로시간 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리고 근로자가 자유롭게 근로시간을 결정할 수 있도록 취업규칙과 노사 간 서면합의를 통해 최대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40시간과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건설업, IT 서비스 산업 등 계절적·시기적 요인이 강하게 작용하여 업무량의 변화 주기가 2주·3개월 또는 1개월보다 긴 경우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활용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 현장에서는 개선에 대한 요구가 계속되고 있음.

이에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을 3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확대하고,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을 현행 1개월 이내에서 3개월 이내로 확대하는 등 근로시간의 합리적 배분을 통한 효율적 인력관리를 도모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과로, 건강상의 문제, 임금수준 저하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을 6개월까지로 확대함(안 제51조제2 항).
- 나. 3개월을 초과하여 단위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의무화하되, 불가피한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도록 함(안 제51조제5항).
- 다. 3개월을 초과하여 단위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각 주의 근로일이 시작되기 2주 전까지 근로자에게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통보하도록함(안 제51조제6항).
- 라. 3개월을 초과하여 단위기간을 정하는 경우 천재지변, 기계 고장, 업무량 급증 등 서면 합의 당시에 예측하지 못한 사유가 발생하면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주별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사전에 근로자에게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통보하도록 함(안 제51조제7항).

- 마. 3개월을 초과하여 단위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자는 기존의 임금수준이 낮아지지 않도록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임금보전방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신고의무를 면제하도록 함(안 제51조제4항 단서 신설).
- 바.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하고 그도입요건을 근로자대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분야별 ·부서별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의 서면 합의로 변경함 (안 제52조제1항).
- 사.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는 근로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64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특수건강진단을 의무화하도록 함(안 제52조제2항).
- 아. 근로시간 연장의 인가 또는 승인 요건을 명확히 하고 선택적 근로 시간제를 적용하는 근로자가 4주 동안 256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연 장근로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2 5%를 추가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함(안 제53조 및 제56조).

법률 제 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2항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 중 "3개월"을 각각 "6개월"로 하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근로시간"을 "근로시간."으로 하며,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3개월을 초과하여 단위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단위기간의 주별 근로시간을 정한다.

다만,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3개월을 초과하여 단위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임금보전방안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3개월을 초과하여 단위기간을 정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으면이에 따른다.

-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3개월을 초과하여 단위기간을 정하는 경우 사용자는 제2항제3호 단서에 따른 각 주의 근로일이 시작되기 2주 전까지 해당 근로자에게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3개월을 초과하여 단위기간을 정하는 경우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당시에는 예측하지 못한 천재지변, 기계 고장, 업무량 급증 등 불가피한 사유가발생한 경우 제2항제3호 단서에 따른 단위기간 내에서 평균하여 제50조제1항에 따른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제1항제3호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변경된 근로일이 개시되기 전에 변경된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5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근로자대표"를 "근로자대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분야별 부서별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로, "1개월"을 "3개월"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개월"을 "3개월"로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는 근로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64시 간을 초과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5조제1 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53조제2항 중 "제52조제2호"를 "제52조제1항제2호"로, "제52조"를 "제5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특별한"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 2. 연구개발, 업무량 증가 등 경영상 사정으로 추가적인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경우
- 3.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제56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이 경우 제52조제1항에 따른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는 근로자가 4주 동안 256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연장근로를 포함함다)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25 이상을 추가로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10조제1호 중 "제53조제1항"을 "제51조제5항, 제53조제1항"으로 한다.

제116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51조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임금보전방안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1조(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제51조(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생 략)	(현행과 같음)
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②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정하면 <u>3개월</u> 이내	<u>6개월</u>
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	
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	
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	
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	
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	
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	
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단위기간(<u>3개월</u> 이내의 일정	2 <u>6개월</u>
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	3
로일별 근로시간 <단서 신설>	<u>근로시간.</u> <u>다만, 3개월</u>
	을 초과하여 단위기간을 정하
	는 경우에는 단위기간의 주별

4. (생략)

- ③ (생략)
- ④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賃金保全方案)을 강구하여야한다. <단서 신설>

<신 설>

그로시	가음	정한다
レエハ	コーコー	70 11 1

- 4. (현행과 같음)
- ③ (현행과 같음)
- _____

-----. <u>다만, 제1항 및 제2항</u> 에 따라 3개월을 초과하여 단위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임금보전방안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되,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3개월을 초과하여 단위기간을 정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 개시 전까지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으면이에따른다.

<신 설>

<신 설>

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 사용 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 ① --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3개 월을 초과하여 단위기간을 정 하는 경우 사용자는 제2항제3 호 단서에 따른 각 주의 근로 일이 시작되기 2주 전까지 해 당 근로자에게 근로일별 근로 시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3개 월을 초과하여 단위기간을 정 하는 경우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 의 당시에는 예측하지 못한 천 재지변, 기계 고장, 업무량 급 증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2항제3호 단서에 따른 단위기간 내에서 평균하여 제5 0조제1항에 따른 1주 간의 근 로시간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제1항제3호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 에게 변경된 근로일이 개시되 기 전에 변경된 근로일별 근로 시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u>근로자대표</u>와 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u>1개월</u> 이 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 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 하는 범위에서 1주 간에 제50 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1일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 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 1. (생략)
- 2. 정산기간(<u>1개월</u>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 3. ~ 6. (생략)
- <신 설>

<u>근로자대표(대통</u>
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직
무분야별・부서별 근로자의 과
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3개월
 1. (현행과 같음)
2 <u>3개월</u>
3. ~ 6. (현행과 같음)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선
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는
근로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64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산업안전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생략)

-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 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 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 2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생략)
- ④ 사용자는 <u>특별한</u>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 설>

보건법」 제130소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
며,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은 고용노동부렁으로 정한다.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현
행과 같음)
②
<u>제52조제1항제2호</u>
<u>제5</u>
2조제1항
③ (현행과 같음)
④ <u>다음 각 호의 어느</u>
하나에 해당하는
,
1.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재
<u>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u>

<신 설>

<신 설>

⑤ (생략)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 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 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 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② ~ ③ (생 략)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제110조(벌칙) -----

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시
고가 발생한 경우		

- 2. 연구개발, 업무량 증가 등 경영상 사정으로 추가적인 연 장근로가 불가피한 경우
- 3.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 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u>경</u>우
- ⑤ (현행과 같음)

①
제52조제1항에 따른 선택적 근
로시간제를 적용하는 근로자
가 4주 동안 256시간을 초과하
여 근로(연장근로를 포함함다)
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근로시
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
의 25 이상을 추가로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 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 조, 제50조, <u>제53조제1항</u>·제2 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54 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6 0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 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 0조제1항·제2항, 제71조, 제74 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 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제 2항을 위반한 자

2. (생략)

제11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저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부과한다.

1. · 2. (생략)

<신 설>

3. (생략)

② (생략)

1
<u>제51</u> 조제5항, 제 <u>53</u>
조제1항
2. (현행과 같음)
∥116조(과태료) ①
1. • 2. (현행과 같음)
3. 제51조제4항 후단을 위반하
여 임금보전방안을 신고하지
<u>아니한 자</u>
4. (현행 제3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